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23
----------	-------

발의연월일 : 2025. 7. 7.

발 의 자 : 임호선 · 김동아 · 이상식
권향엽 · 강득구 · 김한규
장종태 · 윤건영 · 문대림
차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잘못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도로를 구성하는 여러 인프라인가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함.

도로설계 기준은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기준으로 설계 기준 자체로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제한 속도에 비해 급격한 곡선 도로, 통행량에 비해 좁은 차선, 끼어들기가 반복되는 구간, 중앙분리대의 부재 등의 실주행 여건과 동떨어진 도로 인프라는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떠나 잦은 교통사고를 유발함.

도로는 설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관리 및 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행법상 도로설계 이후 도로 안전도를 평가하고, 문제점 등을 보수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현재 호주, 미국, 유럽 내 27개국 등에서 도로안전도평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시 사망 및 중증 환자 감소 효과를 보

고 있음.

이에 도로안전도 평가를 법으로 규정해, 도로의 구조와 환경 등의 도로요인과 교통사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도로의 안정성을 평가하고자 함(안 제56조의4 신설).

또한 도로안전도 평가를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도로안전도 평가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도로 인프라를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6조의5 신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4 및 제5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4(도로안전도 평가) ①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도로안전도 평가(도로의 구조·환경 등 도로요인과 교통사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도로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안전도 평가를 실시한 도로관리청은 평가결과에 따라 소관 도로를 개선·보수하거나, 유지·관리 계획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로안전도 평가의 대상·기준·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5(도로안전도 평가지원센터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도로안전도 평가의 전문적인 기술지원, 평가결과의 검토 및 도로안전도 평가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도로안전도 평가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

4.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안전도 평가지원센터의 연구·개발 및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로안전도 평가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로안전도 평가결과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6조의4(도로안전도 평가) ①</u> <u>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u> <u>하여 주기적으로 도로안전도</u> <u>평가(도로의 구조·환경 등 도</u> <u>로요인과 교통사고의 상관관계</u> <u>를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측정</u> <u>할 수 있는 지표로 도로의 안</u> <u>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u> <u>이하 같다)를 실시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도로안전도</u> <u>평가를 실시한 도로관리청은</u> <u>평가결과에 따라 소관 도로를</u> <u>개선·보수하거나, 유지·관리</u> <u>계획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u> <u>치를 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도로안전도</u> <u>평가의 대상·기준·주기·방</u> <u>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u> <u>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u>제56조의5(도로안전도 평가지원</u> <u>센터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u> <u>관은 제56조의4제1항에 따라</u> <u>실시되는 도로안전도 평가의</u>

전문적인 기술지원, 평가결과의 검토 및 도로안전도 평가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도로안전도 평가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

4.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안전도 평가지원센터의 연구·개발 및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로안전도 평가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제60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 등) ① (생 략)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교통정보 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도로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일 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2. (생 략) <u><신 설></u> 3. (생 략) ③ (생 략)	<u>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u> 제60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2. (현행과 같음) <u>3. 도로안전도 평가결과</u> <u>4. (현행 제3호와 같음)</u> ③ (현행과 같음)
--	--